

청약번호	120240671902	청약일자	2024년 02월 26일	발행일	2024년 02월 26일
계약사항					
계약자명	공일구		주민/사업자번호	621010-1*****	
주 소	[14790]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0 101동701호 (옥길동 , 옥길호반베르디움)				
피보험자	공일구		주민/사업자번호	621010-1*****	
보험기간	2024년 02월 27일 16:00 부터 2025년 02월 27일 16:00 까지 [366일간]				
총 가입금액	1,601,000,000 원		보 험 료	87,600 원	

※ 본 서류는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소비자유형】 전문금융소비자

1. 일반사항

【갱신구분】 신규계약

【적용담보】 화재 기계

【질권사항】

질권자	설정기간	설정금액	설정내용
중소기업은행(인천논현지점)	2024.02.27~2025.02.27 WON	480,000,000	목적물일체

【특이사항】

【총보험가입금액 및 총보험료】

총보험가입금액	총보험료
WON 1,601,000,000	87,600

부 문	가입여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화재담보	가입	1,600,000,000 WON	83,044
기계담보	가입	1,000,000 WON	4,600
배상담보	미가입	0	0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

혼합(Package)보험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부보장추가약관
정보기술특별약관(사이버위험부보장특별약관)
데려행위면책추가약관
보험료정산특별약관(III)

2. 화재손해담보

【대표업종】 주차장(주차전용건물에만적용)

【소재지사항】

소재지 우편번호 소재지 정보
1 (21653)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59 (논현동, 논현메디컬센터)

【목적물 사항】

소재지	목적물	보험목적물	화폐	보험가입금액
1	1	건물및부속설비[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철근콘크리트](지상9층지하2층6339.96㎡/ 지하1,2층)	WON	325,920,030
1	2	건물및부속설비[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철근콘크리트](지상9층지하2층6339.96㎡/1층)	WON	130,761,720
1	3	건물및부속설비[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철근콘크리트](지상9층지하2층6339.96㎡/2-9층)	WON	1,143,318,250

【담보 사항】

소재지	목적물	담보사항	화폐	보험가입금액
1	1	화재	WON	325,920,030
1	2	화재	WON	130,761,720
1	3	화재	WON	1,143,318,250

3. 기계담보

【소재지 사항】

소재지 우편번호 소재지 정보
1 (21653)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59(논현동, 논현메디컬센터)

【목적물 사항】

소재지	목적물	목적물명	수량	보험가입금액
1	1	기계/건물의냉난방설비등건물부대설비일체	1 WON	1,000,000

【담보 사항】

소재지	목적물	담보명	담보내용
1	1	기계재물손해(기계)	WON1,000,000-자기부담금300,000

꼭 아셔야 할 사항

일 반 / 장 기 보 험

보험에 가입하실 때

1.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2.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본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8. 재물보험(화재보험) 가입 시 계약자 안내
 - 재물보험(화재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금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급금액은 손해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시 계약자 안내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실손담보는 등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보험에 가입하신 후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경우, 이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등)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일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6. 보험료 자동납입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지정된 출금일에 이체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일정기간 단위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험 품질보증 안내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킴이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 청약서자필서명(날인)
2. 청약서부분 및 약관교부
3. 약관주요내용설명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1.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모집 질서위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02) 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휴면보험금에 관한 안내

휴면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신청서

본인은 아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요청을 하오니 납입한 초회보험료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일 : 년 월 일
- ◎ 증권번호 :
- ◎ 주민번호 :
- ◎ 보험계약자 : (인)
- ◎ 예금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은 행 :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보험증권, 신분증사본, 통장사본